

#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양천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
- 나.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인 양천주민편익시설로서 준공예정일(2016.6월)에 맞춰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시설명 : 양천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 : 양천구 목5동 900번지 일대
- 시설규모
  - 변경전 : 지하3층/지상2층, 연면적 3,921.42 $m^2$
  - 변경후 : 지하3층/지상3층, 연면적 5,841.52 $m^2$
- 시설용도 :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  
(골프연습장, 수영장, 헬스장, 독서실 등)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예정기간 : 3년(2016. 7. 1.~2019. 6.30.)
- 위탁사무 :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 - 주민편익시설 안정적인 운영·관리
  -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
- 소요예산 : 예산지원없음(수익창출형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 다.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### ○ 필요성

-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양천주민편익시설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·관리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·단체가 필요함

### ○ 기대효과

- 서울시 예산 지원없이 이용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절감
- 전문적인 시설 운영·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

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○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

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최 영 우 (☎2133-3683)